

## 제23장 최종 규정

### 제23.1조 부속서, 부록, 각주 및 양해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, 각주 및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### 제23.2조 개정

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. 개정은 각 당사국이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,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날에 발효한다.

### 제23.3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

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제23.2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.

### 제23.4조 발효

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.

**제23.5조**  
**존속 및 탈퇴**

1. 이 협정은 확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.
2.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. 그러한 탈퇴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통보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.

**제23.6조**  
**정본**

이 협정의 한국어본, 스페인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. 불일치가 있는 경우, 영어본이 우선한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년 월 일 에서 한국어, 스페인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에콰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